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선지급서비스특약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이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주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한다.

나. 보험료 납입기간

해당사항 없음

다. 피보험자 가입나이

주계약에 준함

라. 보험료 납입주기

해당사항 없음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한다.

나.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본다.

다.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부가대상 보험계약

이 특약은 보장성 계약으로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14. 사망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사항

가. 선지급조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로 한다.

나. 선지급 사망보험금액의 한도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포함)의 50%이내에서 피보험자별로 통산하여 최고 1억원까지로 한다. 다만, 1,000만원까지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100%이내로 할 수 있다.

다. 선지급방법

선지급 사망보험금액에서 다음에 정한 (1) ~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뺀 금액을 지급한다.

- (1) 선지급 사망보험금에 대한 여명기간의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
- (2) 선지급 사망보험금에 대한 여명기간의 보험료
- (3)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

라. 선지급후의 처리

선지급 한 사망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일에 감액처리하며, 감액부분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마.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 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대해서도 “가” 내지 “라” 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15. 기타

기타사항은 주계약에 준함